

초등학교 안전사고가 초등교사의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

양정모 · 박영수*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한국교원대학교*

The Impact of Safety Accident on Teacher's Educational Activities in Elementary School

Yang, Jeong - Mo · Park, Young - Soo*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school safety accident on teacher's normal educational activities and to seek some desirable ways to cope with it.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351 class teachers randomly selected from Seoul and Kyonggi Province and surveyed from April through July, 2000.

The conclusions were as follows :

1. Actual Condition of School Safety Accident

1) Approximately many teachers investigated had had an experience to suffer safety accident. Safety accident occurred most during break or class, bu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service area.

2) Safety accident took place most in playground, and the most common cause was student's own carelessness, and the most widely occurred accident type was an injury.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caused by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teachers.

2. Influence of Safety Accident On Teacher's Educational Activities.

1) The largest reason they offered safety education was to ensure student safety. The greatest number of them had an opinion they would consider changing or giving up a planned normal educational activity if they recognized any possibilities of safety acciden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is point according to gender and career.

2) They worried about possible safety accident most during field study, bu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gender or presence or absence of safety accident experience.

3)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eacher produced a significant difference to an experience of avoiding educational activity due to psychological withdrawal, but safety accident experience didn't make any difference.

3. Minimization of Teacher Damage or Loss from Safety Accident.

1) The dominant opinion about teacher's small mistake for any occurrence of safety accident was that the responsibility should be escaped to maintain teacher's authority. For severe mistake, however, there were two different opinions at the same percentage : one was being exempted and the other was taking civil liability.

2) Establishing teacher insurance was preferred as a way to minimize teacher's economic loss from safety accident, bu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gender.

3) The dominant opinion about the payment of insurance premium for safety accident was that it should be paid from school operating expenses.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99년 6월 30일 경기도 화성군 씨랜드 수련원의 그 끔찍한 화재사건을 위시하여 우리는 교육과 관련한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주위에서 늘 대하고 있다. 아무리 경제가 발달했다 하더라도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일어나 인명을 손상하며, 특히 아직 피어보지도 못한 어린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의한 피해는 당사자의 회생과 함께 그 가정의 존재마저 흔드는 중대한 문제이다.

이와 같이 씨랜드 사건처럼 대규모, 다중의 사상을 일으킨 안전사고 외에도 학교에는 과학실, 교실, 운동장 등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때문에 학교생활에서는 안전생활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며, 학교 안전 교육은 학생을 상해로부터 보호하고 생명을 지키는 활동으로서, 학생 스스로 안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실천적인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학교의 교사들은 학생 안전사고의 실태나 원인을 이해하고, 잠재적 위험을 인식하여 이를 예방함은 물론,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박영수, 1998).

본 연구자도 1998년 김포초등학교에서 근무할 당시, 실과 실습시간에 실습을 하려고 하던 중, 어느 조의 가스 기구에 불이 붙여지지 않아서 가스 불을 붙이던 과정에 불이 가스기구 밑에 깔아놓은 신문지에 붙어서 활활 타올랐다. 이 때 본 연구자는 크게 당황하였고 순간적으로 가스통이 폭발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아동들에게 전부 엎드리라고 하고 불을 소화했는데 지금도 그 소화를 어떻게 했는지 전혀 모를 정도로 아찔한 사건이었다.

이 실습시간의 실화 사건이 일어난 이 후 본 연구자는 실과 실습에 대해 상당히 거부감이 생기고 실습을 하더라도 아동들의 조그마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에 따라 매우 과민하게 교육활동을 이끌고 있다.

이와 같이 한 번이라도 안전사고 경험을 겪거나 안전사고를 가까이에서 지켜 본 교사들은 교육활동이 위축되리라고 생각이 되며, 학교 안전 사고를 통해 교권이 침해당할 수도 있고, 법적으로 국가에 의해 구상되어 재산상 큰 손실을 보거나 형사상 소추될 수도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초등학교 현장 교사들이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학교 안전사고의 실태와 안전사고가 교사들의 교육심리와 교육활동에 어떤 영향을 얼마나 끼치는지 연구하여 그 문제점을 알아보고 대책을 제시하여 교사들이 마음놓고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하는 작은 징검다리가 되고자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학교 안전사고의 실태는 어떠한가?
- 2) 학교 안전사고가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3) 학교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3. 연구의 제한점

표집 대상을 서울, 경기도의 일부 지역 초등학교 교사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대해석하는데 무리가 따를 수 있다.

서울·경기 지역의 학급 담임 372명을 임의표집하여 설문 조사하였으며, 통계처리에 적용하는 중 불성실한 답변을 한 21명을 제외하고 총35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조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교 안전사고의 실태, 학교 안전사고가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 학교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된 문항으로 질문지 조사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각 학교의 담임교사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회수된 것 중에서 성실하게 답변한 것만 처리하였다.

3. 조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질문지는 김일수(1997), 김상훈(1999), 서정범(1999)의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문항을 토대로 하여 재구성하였으며, 그 밖의 연구에 필요한 문항은 안전사고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였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Pilot-Test(84부)를 실시한 후 최종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질문지 구성은 표 1과 같다.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초등학교 안전사고가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II. 연구방법

표 1. 질문지 구성

영 역	연 구 내 용 하 위 영 역	문항	
		번호	문항수
1) 학교 안전사고의 실태	(1) 안전사고의 경험유무	1	
	(2) 안전사고의 발생시간	2	
	(3) 안전사고의 발생장소	3	5
	(4) 안전사고의 발생원인	4	
	(5) 안전사고의 유형	5	
2) 학교 안전사고가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	(1) 학교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클 경우의 교육활동 변경 여부	6	
	(2)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심리적인 위축을 느끼는 교육활동	7	3
	(3) 심리적인 위축으로 인한 정당한 교육활동의 기피경험	8	
3) 학교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1) 교사의 경과실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한 개선 방안	9	
	(2) 교사의 증과실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한 개선 방안	10	
	(3) 현 안전공제회의 보완 방안	11	4
	(4) 보험료 납부의 경제적 부담 주체	12	

4. 자료처리

첫째, 서울과 경기 지역의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 질문지를 회수하여 SPSS의 하위 프로그램으로 전산 처리하였다.

둘째, 통계처리를 위해 문항별 백분율(%)을 산출하고 남녀별, 경력별, 지역별, 직급별 차이를 알기 위해서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셋째, 안전사고 경험 유무가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와 같이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는 120명 (34.2%), 여자는 231 (65.8%)로 남자보다 여자의 인원이 약 2배 정도 많았으며, 경력에 따라서는 5년 미만은 75명 (21.4%), 5년~10년은 51명 (14.5%), 10년~20년은 113명 (32.2%), 20년~30년은 94명 (26.8%), 30년 이상은 18명 (5.1%)로 구성되었다.

근무지에 따라서는 시지역은 214명 (61.0%), 군지역은 137명 (39.0%)로 시지역 근무자인 조사 대상자가 22%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		빈도	%
성 별	남자	120	34.2
	여자	231	65.8
경 력	5년 미만	75	21.4
	5년~10년 미만	51	14.5
	10년~20년 미만	113	32.2
	20~30년 미만	94	26.8
	30년 이상	18	5.1
근무지	시부	214	61.0
	군부	137	39.0
직 급	교사	265	75.5
	부장	86	24.5
	계	351	100.0

직급에 따라서는 교사는 265명 (75.5%), 부장교사는 86명(24.5%)로 교사가 51%정도 많이 구성되었다.

2. 학교 안전사고의 실태

1) 안전사고의 경험유무

조사대상자 351명 중 재직시 안전사고를 경험한 경우를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자세히 살펴보면 안전사고 경험이 있는 경우는 150명(42.7%), 없는 경우는 201명(57.3%)로 나타나 많은 교사들이 재직 중에 안전사고를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성별 ($p < .01$)과 경력($p < .05$)에 따라 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에 따라서 살펴보면 남자 교사의 경우 150명 중 73명(60.8%)가 안전사고를 경험하여 여자(33.3%)보다 2배정도 높은 수준이었으며, 경력에 따라서는 5년 미만의 경력 교사가 29.3%로 안전사고의 경험이 가장 적고 경력이 많을수록 점차 안전사고의 경험이 많아지는데, 30년 이상인 경우가 가장 많은 61.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교육경력과 안전사고의 경험이 서로 비례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또 근무지는 시 단위 지역과 군 단위 지역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반교사와 부장교사 사이에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안전사고 발생시간

학교 안전사고를 경험한 150명의 교사들이 경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시간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자세히 살펴보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시간으로는 아침자습 시간은 5.3%, 교과시간은 30.7%, 쉬는 시간이 41.3%, 방과후가 22.7%로 조사되어 쉬는 시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쉬는 시간에 아동들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나타내고, 교사들의 시

표 3. 안전사고의 경험유무

N(%)

일반적 특성	안전사고 경험유무		계	통계량	
	있다	없다			
성 별	남자	73 (60.8)	47 (39.2)	120 (100.0)	$\chi^2=24.405$ $df=1$ $p<.01$
	여자	77 (3.3)	154 (66.7)	231 (100.0)	
경 력	5년 미만	22 (29.3)	53 (70.7)	75 (100.0)	$\chi^2=12.817$ $df=4$ $p<.05$
	5~10년 미만	19 (37.3)	32 (62.7)	51 (100.0)	
	10~20년 미만	48 (42.5)	65 (57.5)	113 (100.0)	
	20~30년 미만	50 (53.2)	44 (46.8)	94 (100.0)	
	30년 이상	11 (61.1)	7 (38.9)	18 (100.0)	
근 무 지	시부	84 (39.3)	130 (60.7)	214 (100.0)	$\chi^2=2.717$ $df=1$ $p>.05$
	군부	66 (48.2)	71 (51.8)	137 (100.0)	
직 급	교사	107 (40.4)	158 (59.6)	265 (100.0)	$\chi^2=2.457$ $df=1$ $p>.05$
	부장	43 (50.0)	43 (50.0)	86 (100.0)	
계	150 (42.7)	201 (57.3)	351 (100.0)		

선에서 가장 멀어지기 쉽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발생 빈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성별, 경력별, 직급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지만, 남자 교사의 경우 교과시간과 쉬는 시간에 일어나는 안전사고의 비율이 비슷한 것으로 보아 교과시간의 안전사고 예방에 소홀한 경우가

있음이 나타나고, 경력이 5년 미만인 교사들의 경우 교과시간보다 쉬는 시간에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비율이 2배정도 되는 것으로 보아 경력이 적은 교사들이 다경력 교사들보다 아동 관리에 능숙하지 못함이 나타난다.

또 이는 근무지($p<.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

표 4. 안전사고의 발생시간

N(%)

		안전사고 발생시간					
일반적 특성		아침 자습 시간	교과 시간	쉬는 시간	방과후	계	통계량
성 별	남자	6 (8.2)	24 (32.9)	26 (35.6)	17 (23.3)	73 (100.0)	$\chi^2=3.596$ $df=3$ $p>.05$
	여자	2 (2.6)	22 (28.6)	36 (46.8)	17 (22.1)	77 (100.0)	
경 력	5년 미만	3 (13.6)	6 (27.3)	9 (40.9)	4 (18.2)	22 (100.0)	$\chi^2=15.931$ $df=12$ $p>.05$
	5~10년 미만	-	8 (42.1)	8 (42.1)	3 (15.8)	19 (100.0)	
	10~20년 미만	-	15 (31.3)	24 (50.0)	9 (18.8)	48 (100.0)	
	20~30년 미만	5 (10.0)	14 (28.0)	15 (30.0)	16 (32.0)	50 (100.0)	
	30년 이상	-	3 (27.3)	6 (54.5)	2 (18.2)	11 (100.0)	
	시부	5 (6.0)	36 (42.9)	34 (40.5)	9 (10.7)	84 (100.0)	
근 무 지	군부	3 (4.5)	10 (15.2)	28 (42.4)	25 (37.9)	66 (100.0)	$\chi^2=21.455$ $df=3$ $p<.01$
직 급	교사	6 (5.6)	35 (32.7)	45 (42.1)	21 (19.6)	107 (100.0)	$\chi^2=2.130$ $df=3$ $p>.05$
	부장	2 (4.7)	11 (25.6)	17 (39.5)	13 (30.2)	43 (100.0)	
계		8 (5.3)	46 (30.7)	62 (41.3)	34 (22.7)	150 (100.0)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시 단위 학교의 경우 교과시간에 안전사고를 경험한 경우가 42.9%로 상당히 높았으며, 군 단위 학교의 경우 방과후에 안전사고를 경험하는 경우가 37.9%로 높게 조사되었다.

3) 안전사고 발생 장소

학교 안전사고의 발생장소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은데, 자세히 살펴보면

교사들이 경험한 안전사고의 발생장소는 교실내인 경우는 31.3%, 운동장은 47.3%, 교외 8.0%로 각각 조사되어 운동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그 다음으로 교실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든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4)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

조사대상자가 경험한 안전사고의 원인에 대하

표 5. 안전사고의 발생장소

N(%)

일반적 특성	안전사고 발생 장소						계	통계량
	교실	운동장	체육관	과학실	교외	기타		
성 별	남자	19 (26.0)	39 (53.4)	2 (2.7)	-	7 (9.6)	6 (8.2)	73 (100.0)
	여자	28 (36.4)	32 (41.6)	2 (2.6)	1 (1.3)	5 (6.5)	9 (1.7)	77 (100.0)
경 력	5년 미만	9 (40.9)	7 (31.8)	1 (4.5)	-	2 (9.1)	3 (13.6)	22 (100.0)
	5~10년 미만	5 (26.3)	10 (52.6)	1 (5.3)	-	1 (5.3)	2 (10.5)	19 (100.0)
	10~20년 미만	12 (25.0)	24 (50.0)	2 (4.2)	1 (2.1)	3 (6.3)	6 (12.5)	48 (100.0)
	20~30년 미만	16 (32.0)	27 (54.0)	-	-	4 (8.0)	3 (6.0)	50 (100.0)
	30년 이상	5 (45.5)	3 (27.3)	-	-	2 (18.2)	1 (9.1)	11 (100.0)
근 무 지	시부	30 (5.7)	37 (44.0)	1 (1.2)	1 (1.2)	7 (8.3)	8 (9.5)	84 (100.0)
	군부	17 (25.8)	34 (51.5)	3 (4.5)	-	5 (7.6)	7 (10.6)	66 (100.0)
직 급	교사	33 (30.8)	50 (46.7)	4 (3.7)	1 (.9)	6 (5.6)	13 (12.1)	107 (100.0)
	부장	14 (32.6)	21 (48.8)	-	-	6 (14.0)	2 (4.7)	43 (100.0)
계		47 (31.3)	71 (47.3)	4 (2.7)	1 (.7)	12 (8.0)	15 (10.0)	150 (100.0)

여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자세히 살펴보면 안전사고 원인으로는 교사의 부주의는 5.3%, 학생의 부주의는 68.0%, 학생간의 다툼은 15.3%, 시설물의 관리 소홀은 4.7%, 교사의 체벌은 0.7%, 기타의 경우가 6.0%로 각각 조사되어 학생들 스스로의 부주의로 인하여 가장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며 그 다음으로 학생들간의 다툼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든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여

자교사들의 경우 남자교사들보다 학생간의 다툼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아 아동들의 안전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체벌로 인한 안전사고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경력이 5년 미만부터 30년 미만의 교사들의 경우, 체벌에 의한 안전사고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의 학교 생활에서 체벌이 그 만큼 감소하고 있는 이유로 보인다.

근무지에 따라서는 군단위 학교보다 시단위 학교에서 교사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2배

표 6. 안전사고의 발생원인

N(%)

		안전사고의 발생원인							
일반적 특성		교사의 부주의	학생의 부주의	학생간의 다툼	시설물의 관리소홀	교사의 체벌	기타	계	통계량
성 별	남자	5 (6.8)	51 (69.9)	8 (11.0)	2 (2.7)	1 (1.4)	6 (8.2)	73 (100.0)	$\chi^2=5.814$ $df=5$ $p>.05$
	여자	3 (3.9)	51 (66.2)	15 (19.5)	5 (6.5)	-	3 (3.9)	77 (100.0)	
경 력	5년 미만	3 (13.6)	13 (59.1)	5 (22.7)	-	-	1 (4.5)	22 (100.0)	$\chi^2=28.563$ $df=20$ $p>.05$
	5~10년 미만	-	14 (73.7)	2 (10.5)	2 (10.5)	-	1 (5.3)	19 (100.0)	
	10~20년 미만	3 (6.3)	32 (66.7)	6 (12.5)	3 (6.3)	-	4 (8.3)	48 (100.0)	
	20~30년 미만	2 (4.0)	37 (74.0)	9 (18.0)	1 (2.0)	-	1 (2.0)	50 (100.0)	
	30년 이상	-	6 (54.5)	1 (9.1)	1 (9.1)	1 (9.1)	2 (18.2)	11 (100.0)	
	시부	6 (7.1)	54 (64.3)	14 (16.7)	3 (3.6)	1 (1.2)	6 (7.1)	84 (100.0)	
근 무 지	군부	2 (3.0)	48 (72.7)	9 (13.6)	4 (6.1)	-	3 (4.5)	66 (100.0)	$\chi^2=3.473$ $df=5$ $p>.05$
	교사	6 (5.6)	69 (64.5)	17 (15.9)	6 (5.6)	-	9 (8.4)	107 (100.0)	
직 급	부장	2 (4.7)	33 (76.7)	6 (14.0)	1 (2.3)	1 (2.3)	-	43 (100.0)	$\chi^2=7.618$ $df=5$ $p>.05$
	계	8 (5.3)	102 (68.0)	23 (15.3)	7 (4.7)	1 (.7)	9 (6.0)	150 (100.0)	

정도 더 나타났지만, 모두 사고 빈도는 낮았다.
교사들의 직급간에는 특별한 차이가 없었다.

5) 안전사고의 유형

조사대상자가 경험한 안전사고의 유형을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은데, 자세히 살펴보면 학교 안전사고의 유형은 상해사고가 86.7%, 장애사고가 2.0%, 사망사고가 1.3%, 기타가 10.0%로 대부분이 상해사고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모든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학교 안전사고가 교사들의 교육 활동에 미치는 영향

1)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에 따른 경우의 교육활동 변경여부

안전사고발생 가능성이 클 경우에 조사대상자들이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하여 변경여부를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7. 안전사고의 유형

N(%)

일반적 특성		안전사고 유형				계	통계량
		상해 사고	장애 사고	사망 사고	기타		
성 별	남자	62 (84.9)	2 (2.7)	2 (2.7)	7 (9.6)	73 (100.0)	$\chi^2=2.572$ $df=3$ $p>.05$
	여자	68 (88.3)	1 (1.3)	-	8 (10.4)	77 (100.0)	
경 력	5년 미만	19 (86.4)	-	-	3 (13.6)	22 (100.0)	$\chi^2=19.232$ $df=12$ $p>.05$
	5~10년 미만	18 (94.7)	-	-	1 (5.3)	19 (100.0)	
	10~20년 미만	43 (89.6)	2 (4.2)	-	3 (6.3)	48 (100.0)	
	20~30년 미만	44 (88.0)	1 (2.0)	1 (2.0)	4 (8.0)	50 (100.0)	
	30년 이상	6 (54.5)	-	1 (9.1)	4 (36.4)	11 (100.0)	
	시부	75 (89.3)	-	1 (1.2)	8 (9.5)	84 (100.0)	
근 무 지	군부	55 (83.3)	3 (2.8)	1 (1.5)	7 (10.6)	66 (100.0)	$\chi^2=4.042$ $df=3$ $p>.05$
	교사	92 (86.0)	-	4 (3.7)	11 (10.3)	107 (100.0)	
직 급	부장	38 (88.4)	-	1 (2.3)	4 (9.3)	43 (100.0)	$\chi^2=1.700$ $df=3$ $p>.05$
	계	130 (86.7)	3 (2.0)	2 (1.3)	15 (10.0)	150 (100.0)	

자세히 살펴보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인식될 때, 처음 의도한 정당한 교육활동을 바꾸거나 포기할 생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바꾸거나 포기를 하겠다는 의견은 16.8%, 바꾸거나 포기를 고려해보겠다는 의견은 64.4%, 바꾸지 않고 밀고 나가겠다는 경우는 14.2%,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4.6%로 각각 조사되어 바꾸거나 포기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80%정도이며 이 중 적극적인 의도는 16.8%정도였다.

이는 성별($p<.01$)과 경력($p<.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교사의 경우 적극적으로 바꾸거나 포기하겠다는 경향이 19.0%로 다소 높았으며, 남자교사의 경우는 바꾸지 않고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의견이 25.0%로 상당히 높았다.

경력에 따라서는 경력이 많을수록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하여 바꾸지 않고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의견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다.

표 8.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클 경우의 교육활동의 변경여부

N(%)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클 경우의 정당한 교육활동 변경여부					통계량
일반적 특성		적극 바꾸거나 포기하겠다	바꾸거나 포기를 고려하겠다	바꾸지 않고 밀고 나가겠다	모르겠다	계	
성 별	남자	15 (12.5)	71 (59.2)	30 (25.0)	4 (3.3)	120 (100.0)	$\chi^2=18.192$ $df=3$ $p<.01$
	여자	44 (19.0)	155 (67.1)	20 (8.7)	12 (5.2)	231 (100.0)	
경 력	5년 미만	8 (10.7)	60 (80.0)	4 (5.3)	3 (4.0)	75 (100.0)	$\chi^2=37.201$ $df=12$ $p<.01$
	5~10년 미만	9 (17.6)	36 (70.6)	2 (3.9)	4 (7.8)	51 (100.0)	
	10~20년 미만	20 (17.7)	76 (67.3)	13 (11.5)	4 (3.5)	113 (100.0)	
	20~30년 미만	18 (19.1)	48 (51.1)	24 (25.5)	4 (4.3)	94 (100.0)	
	30년 이상	4 (22.2)	6 (33.3)	7 (38.9)	1 (5.6)	18 (100.0)	
근 무 지	시부	36 (16.8)	142 (66.4)	25 (11.7)	11 (5.1)	214 (100.0)	$\chi^2=3.265$ $df=3$ $p>.05$
	군부	23 (16.8)	84 (61.3)	25 (18.2)	5 (3.6)	137 (100.0)	
직 급	교사	46 (17.4)	177 (66.8)	30 (11.3)	12 (4.5)	265 (100.0)	$\chi^2=7.661$ $df=3$ $p>.05$
	부장	13 (15.1)	49 (57.0)	20 (23.3)	4 (4.7)	86 (100.0)	
계		59 (16.8)	226 (64.4)	50 (14.2)	16 (4.6)	351 (100.0)	

2) 안전사고에 대한 심리적인 위축을 느끼는 교육활동

조사대상자들이 초등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중 실제적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심리적인 위축을 가장 많이 느끼는 교육활동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자세히 살펴보면, 자연 시간이라는 경향은 8.3%,

체육 시간은 31.1%, 실과 시간은 2.0%, 현장학습 시간은 42.5%, 청소년 단체활동 시간은 10.8%, 기타의 경우가 5.4%로 각각 조사되어 현장학습에 가장 안전사고에 대한 심리적인 위축을 많이 느끼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학내의 활동 중에서는 체육시간이 가장 높았다. 이는 성별($p<.01$)에 따라 그 통계적인

표 9. 안전사고에 대한 심리적인 위축을 느끼는 교육활동

N(%)

일반적 특성	안전사고에 대한 심리적인 위축을 느끼는 교육활동						계	통계량	
	자연	체육	실과	현장 학습	단체 활동	기타			
성 별	남자	6 (5.0)	43 (35.8)	2 (1.7)	39 (32.5)	22 (18.3)	8 (6.7)	120 (100.0)	$\chi^2=18.061$ $df=5$ $p<.01$
	여자	23 (10.0)	66 (28.6)	5 (2.2)	110 (47.6)	16 (6.9)	11 (4.8)	231 (100.0)	
경 력	5년 미만	11 (14.7)	17 (22.7)	2 (2.7)	34 (45.3)	7 (9.3)	4 (5.3)	75 (100.0)	$\chi^2=22.003$ $df=20$ $p>.05$
	5~10년 미만	4 (7.8)	21 (41.2)	1 (2.0)	20 (39.2)	4 (7.8)	1 (2.0)	51 (100.0)	
	10~20년 미만	7 (6.2)	35 (31.0)	4 (3.5)	52 (46.0)	12 (10.6)	3 (2.7)	113 (100.0)	
	20~30년 미만	5 (5.3)	31 (33.0)	-	36 (38.3)	13 (13.8)	9 (9.6)	94 (100.0)	
	30년 이상	2 (11.1)	5 (27.8)	-	7 (38.9)	2 (11.1)	2 (11.1)	18 (100.0)	
근 무 지	시부	19 (8.9)	66 (30.8)	6 (2.8)	96 (44.9)	17 (7.9)	10 (4.7)	214 (100.0)	$\chi^2=7.574$ $df=5$ $p>.05$
	군부	10 (7.3)	43 (31.4)	1 (.7)	53 (38.7)	21 (15.3)	9 (6.6)	137 (100.0)	
직 급	교사	26 (9.8)	80 (30.2)	5 (1.9)	111 (41.9)	28 (10.6)	15 (5.7)	265 (100.0)	$\chi^2=3.736$ $df=5$ $p>.05$
	부장	3 (3.5)	29 (33.7)	2 (2.3)	38 (44.2)	10 (11.6)	4 (4.7)	86 (100.0)	
계	29 (8.3)	109 (31.1)	7 (2.0)	149 (42.5)	38 (10.8)	19 (5.4)	351 (100.0)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교사의 경우 현장 학습보다 체육시간에 더욱 심리적인 위축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력에 따라서는 5~10년 미만의 교사들이 체육시간에 가장 안전사고에 대한 심리적인 위축을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실과 시간은 전체 경력에서 심리적인 위축을 가장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지와 직급에 따라서도 실과 시간에 가장 심리적인 위축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심리적인 위축으로 인한 정당한 교육활동의 기피경험

조사대상자들이 초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실제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추진할 때 심리적인 위축

표 10. 심리적인 위축으로 인한 정당한 교육활동의 기피경험

N(%)

일반적 특성		심리적인 위축으로 인한 정당한 교육활동의 기피경험				계	통계량
		자주 있다	가끔 있다	한두번 있다	없다		
성 별	남자	3 (2.5)	42 (35.0)	33 (27.5)	42 (35.0)	120 (100.0)	$\chi^2=2.092$ $df=3$ $p>.05$
	여자	4 (1.7)	77 (33.3)	80 (34.6)	70 (30.3)	231 (100.0)	
경 력	5년 미만	2 (2.7)	21 (28.0)	28 (37.3)	24 (32.0)	75 (100.0)	$\chi^2=9.181$ $df=12$ $p>.05$
	5~10년 미만	-	16 (31.4)	18 (35.3)	17 (33.3)	51 (100.0)	
	10~20년 미만	2 (1.8)	47 (41.6)	29 (25.7)	35 (31.0)	113 (100.0)	
	20~30년 미만	3 (3.2)	29 (30.9)	30 (31.9)	32 (34.0)	94 (100.0)	
	30년 이상	-	6 (33.3)	8 (44.4)	4 (22.2)	18 (100.0)	
근 무 지	시부	5 (2.3)	71 (33.2)	79 (36.9)	59 (27.6)	214 (100.0)	$\chi^2=7.439$ $df=3$ $p>.05$
	군부	2 (1.5)	48 (35.0)	34 (24.8)	53 (38.7)	137 (100.0)	
직 급	교사	6 (2.3)	89 (33.6)	85 (32.1)	85 (32.1)	265 (100.0)	$\chi^2=.441$ $df=3$ $p>.05$
	부장	1 (1.2)	30 (34.9)	28 (32.6)	27 (31.4)	86 (100.0)	
계		7 (2.0)	119 (33.9)	113 (32.2)	112 (31.9)	351 (100.0)	

으로 인하여 교육활동을 기피한 경험이 있거나, (동학년) 회의시 기피를 주장, 동조한 경험을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10과 같은데, 기피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68.1%이며 이는 모든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통계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학교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1) 교사의 경과실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한 개선 방안

교사들의 경과실에 의한 학교 안전사고의 경우 책임의 한계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11과 같다.

자세히 살펴보면, 경과실에 대한 책임의 한계는 면책특권을 줘야한다는 의견은 72.1%, 민사적 책임만 져야한다는 의견은 22.2%, 형사적 책임만 져야한다는 경우는 2.0%, 민형사적인 책임을 모

표 11. 교사의 경과실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한 개선 방안

N(%)

		교사의 경과실에 의한 안전 사고에 대한 개선 방안					
일반적 특성		면 책 특권을 준 다	민사적 책임만 진 다	형사적 책임만 진 다	민형사적 책임을 진 다	계	통계량
성 별	남자	92 (76.7)	23 (19.2)	3 (2.5)	2 (1.7)	120 (100.0)	$\chi^2=3.575$ $df=3$ $p>.05$
	여자	161 (69.7)	55 (23.8)	4 (1.7)	11 (4.8)	231 (100.0)	
경 력	5년 미만	51 (68.0)	22 (29.3)	1 (1.3)	1 (1.3)	75 (100.0)	$\chi^2=17.924$ $df=12$ $p>.05$
	5~10년 미만	38 (74.5)	11 (21.6)	1 (2.0)	1 (2.0)	51 (100.0)	
	10~20년 미만	80 (70.8)	28 (24.8)	2 (1.8)	3 (2.7)	113 (100.0)	
	20~30년 미만	73 (77.7)	13 (13.8)	3 (3.2)	5 (5.3)	94 (100.0)	
	30년 이상	11 (61.1)	4 (22.2)	-	3 (16.7)	18 (100.0)	
근 무 지	시부	159 (74.3)	40 (18.7)	5 (2.3)	10 (4.7)	214 (100.0)	$\chi^2=5.163$ $df=3$ $p>.05$
	군부	94 (68.6)	38 (27.7)	2 (1.5)	3 (2.2)	137 (100.0)	
직 급	교사	185 (69.8)	65 (24.5)	5 (1.9)	10 (3.8)	265 (100.0)	$\chi^2=3.437$ $df=3$ $p>.05$
	부장	68 (79.1)	13 (15.1)	2 (2.3)	3 (3.5)	86 (100.0)	
계		253 (72.1)	78 (22.2)	7 (2.0)	13 (3.7)	351 (100.0)	

두 쟁야한다는 의견은 3.7%로 각각 조사되어 안전사고로 인한 경과실에 대한 책임의 한계로 법적으로 면책특권을 주도록 법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정법상 경과실에 의한 안전사고의 경우 면책특권에 가까운 교권보장 조항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모든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그 통계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교사의 중과실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한 개선 방안

교사들의 중과실에 의한 안전사고일 경우 그 책임의 한계를 어느 정도까지 물어야하는지를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12와 같은데, 면책특

표 12. 교사의 중과실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한 개선 방안

N(%)

		교사의 중과실에 의한 안전 사고에 대한 개선 방안					
일반적 특성		면 책 특권을 준 다	민사적 책임만 진 다	형사적 책임만 진 다	민형사적 책임을 진 다	계	통계량
성 별	남자	62 (51.7)	44 (36.7)	7 (5.8)	7 (5.8)	120 (100.0)	$\chi^2=5.046$ $df=3$ $p>.05$
	여자	94 (40.7)	112 (48.5)	10 (4.3)	15 (6.5)	231 (100.0)	
경 력	5년 미만	29 (38.7)	40 (53.3)	3 (4.0)	3 (4.0)	75 (100.0)	$\chi^2=18.469$ $df=12$ $p>.05$
	5~10년 미만	16 (31.4)	28 (54.9)	3 (5.9)	4 (7.8)	51 (100.0)	
	10~20년 미만	49 (43.4)	52 (46.0)	5 (4.4)	7 (6.2)	113 (100.0)	
	20~30년 미만	54 (57.4)	29 (30.9)	6 (6.4)	5 (5.3)	94 (100.0)	
	30년 이상	8 (44.4)	7 (38.9)	-	3 (16.7)	18 (100.0)	
근 무 지	시부	96 (44.9)	90 (42.1)	12 (5.6)	16 (7.5)	214 (100.0)	$\chi^2=2.664$ $df=3$ $p>.05$
	군부	60 (43.8)	66 (48.2)	5 (3.6)	6 (4.4)	137 (100.0)	
직 급	교사	111 (41.9)	126 (47.5)	12 (4.5)	16 (6.0)	265 (100.0)	$\chi^2=4.248$ $df=3$ $p>.05$
	부장	45 (52.3)	30 (34.9)	5 (5.8)	6 (7.0)	86 (100.0)	
계		156 (44.4)	156 (44.4)	17 (4.8)	22 (6.3)	351 (100.0)	

권을 줘야한다는 경우는 44.4%, 민사적 책임만 져야한다는 경우는 44.4%, 형사적 책임만 져야한다는 경우는 4.8%, 민형사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경우는 6.3%로 나타나 중과실에 대한 법적인 보완장치의 책임의 한계는 면책특권을 줘야한다와 민사적인 책임만은 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같이 나왔고, 이는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통계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현 안전공제회의 보완 방안

안전사고로 인한 교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제적 보완장치인 현 안전공제회의 보완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13과 같다.

자세히 살펴보면,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경제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면 현행 안전공제회의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같이 교원보험

표 13. 현 안전공제회의 보완 방안

N(%)

		현 안전공제회의 보완 방안							
일반적 특성		교원 보험을 신설하여 처리한다	현안전 공제회에 보험업무를 추가한다	교육청에 안전사고 대책반을 신설한다	현안전 공제회를 그대로 둔다	운영위원회, 어머니회 등에서 보험 맡아 관리한다	학교내에 보험계를 개설하여 관리한다	계	통계량
성 별	남자	65 (54.2)	35 (29.2)	9 (7.5)	6 (5.0)	5 (4.2)	- (100.0)	120	$\chi^2=11.987$
	여자	119 (51.5)	84 (36.4)	21 (9.1)	4 (1.7)	1 (.4)	2 (.9)	231 (100.0)	$df=5$ $p<.05$
경 력	5년 미만	40 (53.3)	17 (22.7)	14 (18.7)	2 (2.7)	1 (1.3)	1 (1.3)	75 (100.0)	
	5~10년 미만	26 (51.0)	20 (39.2)	2 (3.9)	1 (2.0)	2 (3.9)	- (100.0)	51	
	10~20년 미만	62 (54.9)	38 (33.6)	7 (6.2)	4 (3.5)	1 (.9)	1 (.9)	113 (100.0)	$\chi^2=26.807$ $df=20$ $p>.05$
	20~30년 미만	49 (52.1)	36 (38.3)	6 (6.4)	1 (1.1)	2 (2.1)	- (100.0)	94	
	30년 이상	7 (38.9)	8 (44.4)	1 (5.6)	2 (11.1)	- (100.0)	- (100.0)	18	
근 무 지	시부	112 (52.3)	70 (32.7)	20 (9.3)	6 (2.8)	4 (1.9)	- (100.0)	214	$\chi^2=2.006$
	군부	72 (52.6)	49 (35.8)	10 (7.3)	4 (2.9)	2 (1.5)	- (100.0)	137 (100.0)	$df=5$ $p>.05$
직 급	교사	136 (51.3)	89 (33.6)	25 (9.4)	9 (3.4)	4 (1.5)	2 (.8)	265 (100.0)	$\chi^2=3.317$
	부장	48 (55.8)	30 (34.9)	5 (5.8)	1 (1.2)	2 (2.3)	- (100.0)	86 (100.0)	$df=5$ $p>.05$
	계	184 (52.4)	119 (33.9)	30 (8.5)	10 (2.8)	6 (1.7)	2 (.6)	351 (100.0)	

을 신설하여 학교 안전사고가 나면 일괄적으로 맡아서 처리하자는 방법에 대한 응답은 52.4%, 안정공제회에 보험업무를 추가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방법에 대한 응답은 33.9%, 교육청에 안전사고 대책반을 신설하여 대응하도록 하자는 방법에 대한 응답은 8.5%, 현행 안정공제회를 그대

로 둬야한다는 응답은 2.8%, 학교운영위원회나 어머니회, 동창회 등에서 보험을 맡아 관리하게 해야한다는 방법에 대한 응답은 1.7%, 학교내에 보험계를 개설하여 관리하도록 하게 해야 한다는 응답은 0.6%로 각각 조사되어, 교원보험을 신설하여 안전사고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표 14. 보험료 납부의 경제적 부담 주체

N(%)

		보험료 납부의 경제적 부담 주체						
일반적 특성		교원	학 교 운영비	교원과 학교가 공동 부 담	학부모	기 타	계	통계량
성별	남자	3 (2.5)	63 (52.5)	32 (26.7)	8 (6.7)	14 (11.7)	120 (100.0)	$\chi^2=5.745$ $df=4$ $p>.05$
	여자	6 (2.6)	129 (55.8)	73 (31.6)	6 (2.6)	17 (7.4)	231 (100.0)	
경력	5년 미만	1 (1.3)	33 (44.0)	30 (40.0)	3 (4.0)	8 (10.7)	75 (100.0)	$\chi^2=19.013$ $df=16$ $p>.05$
	5~10년 미만	-	29 (56.9)	18 (35.3)	-	4 (7.8)	51 (100.0)	
	10~20년 미만	5 (4.4)	67 (59.3)	29 (25.7)	7 (6.2)	5 (4.4)	113 (100.0)	
	20~30년 미만	3 (3.2)	52 (55.3)	24 (25.5)	3 (3.2)	12 (12.8)	94 (100.0)	
	30년 이상	-	11 (61.1)	4 (22.2)	1 (5.6)	2 (11.1)	18 (100.0)	
	시부	6 (2.8)	122 (57.0)	61 (28.5)	8 (3.7)	17 (7.9)	214 (100.0)	
근무지	군부	3 (2.2)	70 (51.1)	44 (32.1)	6 (4.4)	14 (10.2)	137 (100.0)	$\chi^2=1.597$ $df=4$ $p>.05$
	교사	4 (1.5)	143 (54.0)	86 (32.5)	10 (3.8)	22 (8.3)	265 (100.0)	
직급	부장	5 (5.8)	49 (57.0)	19 (22.1)	4 (4.7)	9 (10.5)	86 (100.0)	$\chi^2=7.599$ $df=4$ $p>.05$
	계	9 (2.6)	192 (54.7)	105 (29.9)	14 (4.0)	31 (8.8)	351 (100.0)	

것을 가장 선호하였다. 이는 성별($p<.05$)에 따라 그 통계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교사의 경우 교원보험을 신설해야한다는 의견은 54.2%, 현재의 안전공제회를 그대로 둔다는 의견이 5.0%로 다소 높게 조사되었으며, 여자교사의 경우는 현행 안전공제회에 보험 업무를 추가(36.4%)하거나 교육청에 안전사고 대책반을 신설(9.1%)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다소 높게 조사되었다.

4) 보험료 납부의 경제적 부담 주체

교원보험을 실시할 경우에 보험료 부담의 주체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는 표 14와 같은데, 학교의 운영비로 납부해야 한다는 경우는 54.7%, 교원과 학교가 공동 부담해야 한다는 경우는 29.9%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모든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그 통계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안전사고 경험유무에 따른 초등학교 안전사고가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미 치는 영향

1) 안전사고발생 가능성이 클 경우의 교육 활동 변경여부

조사대상자 중에서 안전사고의 경험유무에 따라 학교 안전사고의 발생가능성이 클 경우의 교육활동 변경여부의 차이를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15와 같다.

자세히 살펴보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클 경우 교육활동 변경여부는 안전사고를 경험한 교사가 오히려 18.0%로 경험하지 못한 교사 11.4%보다 교육활동을 변경하지 않고 밀고 나가겠다고

응답하였지만, 그 통계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안전사고에 대한 심리적인 위축을 느끼는 교육 활동

조사대상자 중에서 안전사고의 경험유무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한 심리적인 위축을 가장 많이 느끼는 교육활동의 차이를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16과 같다.

자세히 살펴보면 안전사고 경험유무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심리적인 위축을 느끼는 교육활동은 안전사고 경험여부에 따라 그 통계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 < .01$).

안전사고를 경험한 교사의 경우는 체육시간

표 15.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클 경우의 교육활동 변경여부

N(%)

안전사고 경험유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클 경우의 교육활동 변경여부					계	통계량
	적극적으로 바꾸거나 포기하겠다	바꾸거나 고려해 보겠다	바꾸지 않고 밀고 나가겠다	잘 모르겠다			
있다	28 (18.7)	92 (61.3)	27 (18.0)	3 (2.0)	150 (100.0)		$\chi^2=7.271$
없다	31 (15.4)	134 (66.7)	23 (11.4)	13 (6.5)	201 (100.0)		$df=3$
계	59 (16.8)	226 (64.4)	50 (14.2)	16 (4.6)	351 (100.0)		$p>.05$

표 16. 안전사고에 대한 심리적인 위축을 느끼는 교육활동

N(%)

안전사고 경험유무	안전사고에 대한 심리적인 위축을 느끼는 교육활동						계	통계량
	자연	체육	실과	현장 학습	청소년 단체활동	기타		
있다	11 (7.3)	57 (38.0)	6 (4.0)	49 (32.7)	17 (11.3)	10 (6.7)	150 (100.0)	$\chi^2=16.356$
없다	18 (9.0)	52 (25.9)	1 (.5)	100 (49.8)	21 (10.4)	9 (4.5)	201 (100.0)	$df=5$ $p<.01$
계	29 (83.0)	109 (31.1)	7 (2.0)	149 (42.5)	38 (10.8)	19 (5.4)	351 (100.0)	

(38.0%)에 심리적인 위축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반면에 현장학습에 대한 심리적인 위축은 다소 떨어졌으나 안전사고를 경험하지 않은 교사의 경우는 현장학습(49.8%)에 대한 심리적인 위축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심리적인 위축으로 인한 정당한 교육활동의 기피 경험

조사대상자 중에서 안전사고의 경험유무에 따라 정당한 교육활동을 추진할 때 심리적인 위축으로 인하여 교육활동을 기피한 경험이 있거나, (동학년)회의시 기피를 주장, 동조한 경험의 차이를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17과 같다.

표 17. 심리적인 위축으로 인한 정당한 교육활동 기피경험 N(%)

안전 사고 경험	심리적인 위축으로 인한 정당한 교육활동의 기피경험				계	통계량
	유무	자주	가끔	한두번 있다	없다	
있다	5 (3.3)	62 (41.3)	46 (30.7)	37 (24.7)	150 (100.0)	$\chi^2=11.116$
없다	2 (1.0)	57 (28.4)	67 (33.3)	75 (37.3)	201 (100.0)	df=3 $p<.05$
계	7 (2.0)	119 (33.9)	113 (32.2)	112 (31.9)	351 (100.0)	

자세히 살펴보면 안전사고 경험유무에 따른 심리적인 위축으로 인하여 정당한 교육활동의 기피경험은 안전사고 경험여부에 따라 그 통계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 < .05$).

안전사고 경험이 있는 교사는 심리적인 위축으로 인하여 정당한 교육활동을 자주 또는 가끔 기피한다는 응답이 44.6%로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안전사고 경험이 없는 교사는 자주 또는 가끔 기피한다는 응답이 29.4%로 나타났다.

IV. 논 의

1. 학교 안전사고의 실태

초등학교 교사들의 학교안전사고의 경험을 살펴보면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안전사고를 경험한 경우는 42.7%, 없는 경우는 57.3%로 나타났으며, 이는 성별($p<.01$)과 경력($p<.05$)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1999)의 연구는 강원도 지역에서 이루어졌는데, 본 연구보다 높은 안전사고 경험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안전사고의 경험유무는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학교 안전사고의 발생시기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쉬는 시간이 41.3%, 교과시간이 30.7%로 나타났고, 근무지($p<.01$)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김상훈(1999)의 연구에서도 쉬는 시간에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안전사고의 발생장소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운동장이 47.3%, 교실내가 31.3%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으로 보아서 아동들이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운동장에서의 안전생활에 대한 사전지도가 더 요구된다고 사료된다.

안전사고의 원인은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생의 부주의가 68.0%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교사의 체벌에 의한 사고는 0.7%로 나타났다.

서정범(1999), 김일수(1997)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해 주고 있는 있는데,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안전교육의 중점이 아동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력에 주어져야겠다고 사료된다.

안전사고의 유형은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상해사고가 86.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서정범(1999), 김상훈(1999)의 연구에서도 안전사고의 유형은 대부분이 상해사고를 나타내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2. 학교 안전사고가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클 경우 정당한 교육활동을 변경하겠느냐의 응답은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은데, 적극적으로 바꾸겠다가 16.8%, 바꾸거나 포기를 고려해 보겠다는 의견이 64.4%로 성별($p < .01$)과 경력($p < .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지만, 안전사고의 경험유무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젊은 여교사일수록 안전사고를 우려해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부족한 결과로 보아서 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안전사고에 대한 심리적인 위축을 가장 많이 받는 교육활동은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현장학습이 42.5%, 체육시간이 31.1%로 나타났는데, 이는 성별($P < .01$)과 안전사고의 경험유무($P < .01$)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교사의 경우와 안전사고를 경험한 교사는 현장학습보다 체육시간에 더욱 심리적인 위축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남자교사가 체육교과에 더 열심히 아동들을 위해 지도하고, 여교사의 경우 체육시간을 소홀히 하는데서 기인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심리적인 위축으로 인한 교육활동의 기피경험은 표 10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자주 있다는 2.0%, 가끔 있다는 33.9%, 한두 번 있다는 32.2%로 응답하였는데, 이는 안전사고의 경험유무($p < .05$)에 따라 통계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당수의 교사들이 안전사고를 우려한 심리적 위축으로 교육활동을 기피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과거와 달리 근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사들에 대한 교권침해나 문제, 경제적 피해를 우려한 교사들의 피해의식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3. 학교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교사의 경과실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사들의 책임의 한계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표 1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면책특권을 줘야한다는 의견이 72.1%로 나타나 교사들이 현재의 실정법과 판례에 대한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으며, 경과실의 경우 면책특권이 주어질 경우 더욱 활발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서정범(1999)의 연구결과도 비슷한 내용을 보이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교사의 중과실에 대한 책임의 한계는 표 1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면책특권을 줘야한다는 응답이 44.4%, 민사적 책임만 줘야한다는 응답이 44.4%로 같게 나왔는데, 이러한 응답결과는 교사들이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면도 많지만, 경제적 책임까지 외면하지는 않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완장치의 경우는 표 13에 제시된 바와 같이 52.4%가 일괄적으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고 책임을 대신하는 교원보험 같은 기구나 제도를 원하고, 33.9%는 현행 안전공제회에 보험업무를 추가해서 대용하자는 응답을 하였는데, 이는 성별($P < .05$)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상훈(1999)의 연구결과도 교사들이 교원보험 같은 기구를 통해 안전사고를 일괄처리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응답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안전사고를 대비한 교원보험 같은 기구나 제도를 신설할 경우 보험료 부담은 누가 해야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표 14와 같이 54.7%가 학교 운영비로 납부해야 한다, 29.9%가 교원과 학교가 공동으로 납부해야한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교사들이 안전사고를 단순히 교사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결과로 미루어 보아 학교 안전사고를 상당수의 교사들이 겪고 있으며, 안전사고는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현재의 안전사고에 관련한 제도가 하루속히 보완되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안전사고가 초등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안전사고가 초등교사들에게 주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바람직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2000년 4월부터 2000년 7월까지 서울·경기 지역의 학급 담임 351명을 임의표집하여 안전사고의 실태 5문항, 초등학교 안전사고가 초등교사들의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 7문항, 학교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6문항 등 총 18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을 조사하고, 통계처리를 위해 문항별 백분율(%)을 산출하고 남녀별, 경력별, 지역별, 직급별, 안전사고 경험유무의 변인 간 차이를 알기 위해서 χ^2 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학교 안전사고의 실태

(1) 많은 교사들이 안전사고를 경험했으며, 여자 교사보다는 남자 교사가, 경력이 적은 교사보다 경력이 많은 교사일수록 더 높은 안전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안전사고 발생 시간은 쉬는 시간과 교과 시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들의 근무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안전사고 발생장소로는 운동장, 사고원인 별로는 학생의 부주의, 사고 유형으로는 상해사고가 가장 높게 나왔지만 교사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없게 나타났다.

2) 안전사고가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

(1) 안전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인식될 경우에는 그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바꾸거나 포기를 고려해 보겠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이는 성별과 경력에 따라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있는데, 특히 여교사의 경우 높게 나타났으며 경력이 적은 교사일수록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바꾸겠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고, 안전사고 경험유무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안전사고 때문에 심리적 부담을 가장 많이 받는 교과로는 현장학습, 체육시간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성별과 안전사고 경험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남자교사의 경우와 안전사고를 경험한 교사의 경우, 현장학습보다는 체육시간에 더 위축된다고 나타났다.

(3) 심리적 위축으로 인하여 교육활동을 기피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체적으로 교육활동을 기피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이는 교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안전사고의 경험에 따라서는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1) 안전사고로 인한 교권보호를 위해서 안전사고 발생시 교사들의 경과실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줘야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중과실의 경우는 면책특권을 줘야한다는 의견과 민사적 책임만 져야한다는 의견이 같은 비율로 나왔으며, 이는 모든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그 통계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교사들의 안전사고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동차 보험과 같이 교원보험을 신설하여 학교 안전사고가 나면 맡아서 처리하는 방법을 가장 선호하였는데, 이는 성별에 따라서 그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교사의 경우는 교원보험을 신설해야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반면, 여자교

사의 경우는 현재의 안전공제회에 보험 업무를 추가하거나 교육청에 안전사고 대책반을 신설하는 의견이 다소 높았다.

(3)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료의 부담은 학교 운영비로 납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고, 이는 모든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그 통계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제언

본 연구를 통한 결론을 바탕으로 초등학교의 안전사고가 초등교사들의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교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요구되므로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전국적인 조사를 통해 학교 안전사고가 초등교사의 교육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가 요구된다.

(2)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경과실에 의한 안전사고는 면책특권 등의 보완조치를 통해 초등학교 현장에서 교사들, 특히 젊은 교사들이 의욕적으로 아동들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3)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교사들의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서 교원보험 같은 제도적 장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참 고 문 헌

1. 김병석. 안전교육실무추진, 서울 : 안전문화사, 1991.

2. 김상훈. 학교안전사고의 실태 및 대책과 문제점에 대한 연구, 상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3. 김용수. 안전교육론, 서울 : 보경문화사, 1986.
4. 김일수. 학교안전사고 실태분석 및 그 대책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5. 김재은. 아이들의 안전사고를 막아라, 서울 : 샘터사, 1993.
6. 박연홍. 안전교육실무추진, 서울 : 안전문화사, 1992.
7. 박영수. 학교보건학, 서울 : 신광출판, 1999.
8. 박영수, 이효근. 학교를 통한 건강증진, 서울 : 도서출판 대학서림, 1999.
9.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 학생사안과 예방지도,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 1982.
10. 서정범. 학교안전사고와 교권,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11. 송수남. 안전교육, 서울 : 교육출판사, 1976.
12. 윤건치. 학교 안전사고 보상체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91.
13. 이상우 외 2. 신 안전교육, 서울 : 세종출판사, 1994.
14. 이수희. 학교보건교육론, 서울 : 교육출판사, 1994.
15. 이희승 감수. 국어사전, 서울 : 민중서림, 1998.
16. 주낙서. 인체 안전 교육론, 서울 : 명지출판사, 1987.
17. 清川誠一. 상해처치, 동경 : 동경신은조사, 1973.
18. 최영일. 초등학교 안전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98.
19. 최인범. 안전교육, 서울 : 정민사, 1982.